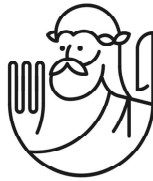


가 맹 계 약 서



GOD EAT

계 약 구 분

가 맹 점 명

점 주 명

(인)

* 본 계약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원제출 등의 용도 외 무단복제, 제3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갓잇의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더갓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의 지위)
- 제4조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
- 제5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 제6조 (입지선정 및 영업지역)
- 제7조 (계약기간과 갱신)

제2장 개점 준비

- 제8조 (최초 가맹금과 예치에 관한 사항)
- 제9조 (개점 전 교육·훈련)
- 제10조 (가맹점의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 제11조 (추가품목의 구입 및 오픈 홍보·판촉)
- 제12조 (초도물품의 주문)
- 제13조 (인 • 허가 및 초기 투자금의 납입)
- 제14조 (개점 점검 및 승인)

제3장 영업활동의 조건

- 제15조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 등)
- 제16조 (개점 이후 교육 및 훈련)
-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 제18조 (경업금지 의무)
- 제19조 (경영지도)
- 제20조 (감독 및 통제)
- 제21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품목)
- 제22조 (구입 강제 품목의 지정 및 판매가격)
- 제23조. (구매 강제 제품의 협의 방식)

- 제24조 (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 제25조 (자점매입)
- 제26조 (공급품의 하자·검사와 반품)
- 제27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 제28조 (복장 및 영업시간)
- 제29조 (가맹점설비의 유지 관리 및 점포환경 개선)
- 제30조 (회계·통지의무 및 POS 등)
- 제31조 (광고·판촉 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 제32조 (광고·판촉 행사의 실시 등)
- 제33조 (광고 판촉 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제4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 제34조 (개점 전 해약)
- 제35조 (계약의 자동적 해지)
- 제36조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지)
- 제37조 (합의 해지)
- 제38조 (중도 해지)
- 제39조 (계약의 해지)
- 제40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 제41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 제42조 (가맹금의 반환 등)
- 제43조 (영업의 양도 등)
- 제44조 (영업의 승계 및 상속 등)

제5장 기타

- 제45조 (지연손해금)
- 제46조 (통지 방법)
- 제47조 (동의와 권리행사)
- 제48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 제49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 제50조 (보험)
- 제51조 (고객 불만 처리)
- 제52조 (사전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가맹본부’(Franchisor) (주)더갓과 ‘가맹점사업자’(Franchisee) _____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가맹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전 문 -

1. 본 계약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관계 법령을 기초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가맹 계약 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공급품 일체 및 그 가맹점 조직은 ‘가맹본부’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 및 기술, 용역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이다. 이의 특징은 매장 내의 특이한 장식과 색채, 비품, 복장 등에 있고, ‘가맹본부’에 대한 표시는 상호·상표 등으로 나타낸다.
3. ‘가맹본부’는 『갓잇』이라는 상호·상표 등으로 표시되는 공급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방법과 교육, 지원 등에 관한 표준적이고, 독특하며, 통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4. ‘가맹본부’는 『갓잇』이라는 상호·상표 등과 관련된 모든 권리·이익 및 이와 관련된 파생적 상표나 노하우 등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5.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의적인 상품 개발·판매·사용을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절한 경영지도와 통제를 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체이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체결한 약정상에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가진다.
7.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의 가맹점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경영이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가맹본부’의 경영방침과 영업 지도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목표 달성과 상호이익 증진을 통한 지속적인 제휴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갓잇』 가맹사업(이하 “가맹사업”이라 한다)에 가맹점으로 참여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가맹계약”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라 영업 표지를 사용하고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품질기준과 기타 영업방식에 의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고 아울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 및 지원할 것을 약정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 표지의 사용 허가와 영업상 통제 및 지원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4. “협력(지정)업체”라 함은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물류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하여 ‘가맹본부’를 대행해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체를 말한다.
5. “공급품”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의 목적상 제조, 구입 또는 알선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품목을 말한다.
6. “강제 품목”이라 함은 가맹 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밝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구입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7. “권장 품목”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구입처 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8.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9. “경쟁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매뉴얼”이라 함은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가맹점의 운영요령 및 세부 의무 사항으로서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약정을 기재한 책자(‘가맹본부’가 가맹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통보 문서 및 규정집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가맹비”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최초 가맹 계약 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정보공개서’상에 명기된 금전을 말한다.
12. “로열티(Royalty)”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사업에 착수한 이후 가맹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13.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대금이나 자재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4. “예치가맹금(예치금)”이라 함은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등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가맹본부’가 관련 법률에 의거 지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할 금전을 말하며, 계약 체결 전에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 금전을 포함한다.
15.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6.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 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운영규칙”이라 함은 별첨과 같이, 고객에 대한 「갓잇」 브랜드의 가치, 신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갓잇사업 및 가맹점 운영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방침으로써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계약 기간중 서면 또는 홈페이지 공지 사항 등에 의한 통지로서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의 지위)

-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가맹점의 표시는 [부속명세서1]과 같다.
- ② 본 계약상의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및 임차계약서상의 임차인(자가 점포인 경우 소유주)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만약 위 세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하나라도 상이한 경우, 그 다른 계약자는 경영파트너로서 본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하며 연대책임을 진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부속명세서1]** 가맹점의 표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가맹본부’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에는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갓잇』 가맹점의 경영에 임하는 것으로, 스스로 종업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 등의 경영주로서의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아가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직원의 고용, 가맹점의 운영, 세금의 납부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본부’의 이름으로 채무 인수 보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

- ① ‘가맹본부’는 영업 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된 BI를 사용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 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③항의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은 ‘가맹본부’의 독점적인 권리이고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범위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1. **[부속명세서1]**에 표기된 가맹점 소재지에서 ‘가맹본부’가 보유한 영업 표지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위치의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가맹본부’가 최초 제시한 인테리어 도면에 의한 시설물)에 이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

2. 기타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얻어 가맹점 소재지에서 '가맹본부'의 영업 표지를 판촉, 홍보 활동 등에 사용할 권리

- ⑤ '가맹점사업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을 가맹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 표지의 통일성 내지 동일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본부'의 영업 표지를 변경 내지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유사한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자체 법인명 등 법적인 명칭과 기타 통용되는 명칭에 '가맹본부'가 현재 사용 중인 명칭 또는 변경된 명칭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본부'의 영업상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 (가맹점운영권의 부여)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6조의 영업지역 내에서 『갓잇』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한다. 다만, 그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1. '가맹본부'가 사용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갓잇』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2. '가맹본부'로부터 『갓잇』 가맹점 운영을 위해 공급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3. 가맹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로부터 지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공동광고, 판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로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
- ② 전항의 가맹점운영권은 '가맹점사업자'의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되는 시점부터 소멸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부여됨과 동시에 자기의 점포 내·외부에 '가맹본부'가 제공한 가맹점 모

집 관련 창업 안내물 등의 부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본 계약과는 별도로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 약정서, 협정서, 규정, 운영규칙 및 정책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입지선정 및 영업지역)

- 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부속명세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일반적인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해당 가맹점포로부터 반경 500m로 한다
- ② 전항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점포의 매출액 및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과 점포 개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 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임을 확약한다.
- ③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기간 중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 ④ 제1항의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아울렛,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놀이공원, 대학교, 호텔, 공항, 관공서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이므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⑥ 온라인(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서비스 및 상품 판매는 제①항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가맹본부’에 있다.
- ⑦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 제②항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7조 (계약 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초 2년, 계약갱신시 2년 단위로 갱신한다.

② ‘가맹본부’는 본 계약서를 가맹 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 기간 종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 계약의 갱신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아래 각호의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진열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가맹사업자’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사업자’가 정기적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③항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가맹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⑤ ‘가맹본부’가 제③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가맹본부’가 제③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가맹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⑥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5.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⑧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 시 다음의 각호를 계약갱신일 이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는 이전 계약기간에서 발생한 ‘가맹본부’에 대한 상품 대금, 대여금 및 기타 비용 등 모든 금융상의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여야 한다.
 2. 계약갱신 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서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새로운 가맹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갱신에 따라 갱신수수료는 최초가맹비의 50%인 금일천육백오십만(16,500,000)원 (부가세 포함)을 납부한다.

제2장 개점 준비

제8조 (초기 가맹금과 예치에 관한 사항)

- ①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아래 표에서 정하는 최초 가맹금을 지급한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가맹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금(계약이행보증금 제외)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단, 종료 시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최초 가맹금 내역 (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금 삼천삼백만원 (33,000,000원)	소멸성 비용
최초교육비	금 오백오십만원 (5,500,000원)	소멸성 비용
개점홍보비	금 삼백오십만원 (3,300,000원)	소멸성 비용
계약이행보증금	금 삼백만원 (3,000,000원)	부가세 없음

- ② 전항의 가맹비는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제반 비용으로서 본 계약서 제42조(가맹금의 반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되지 않는다.
- ③ 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본부’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항의 계약이행보증금과 잔존채무 및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여 정산한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상환시 이자는 발생되지 아니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제40조 제①항의 후속 조치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가맹본부’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제①항의 금전(이하 “최초 가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아래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 예치금을 “최초 가맹금”으로 지급 받는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지급 받을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개점 행사와 관련한 홍보물, 인쇄물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협의 하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

제9조 (개점 전 교육·훈련)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갓잇』 가맹점으로서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이후에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자격을 획득한다.
- ② 개점 전 교육·훈련은 자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자 합의하에 교육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개점 전 교육·훈련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기본인원이 개점 전 교육·훈련을 반드시 수료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본인원(가맹점주 포함 2명) 이외에 추가 인원의 교육을 원할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추가 교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는 교육훈련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 완료 후 교육 이수 대상을 평가하며, 수료기준과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료기준: 이론평가점수 80점 이상, 실기평가점수 80점 이상
 2. 불합격 기준: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경우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동시 교육 시 1인이더라도 불합격인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교육 2회 이상 결근 시
 3. 불합격자 재시험 기준: 이론/실기 평가점수 각 80점 미만일 경우 재시험 진행
 4. 불합격자 재시험 규정: 수료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일정 조율하여 이론/실기평가 최대 3회까지 재시험 진행
- ⑤ 재시험은 4회 이상 불가하며 교육 수료기준 미달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운영권이 상실될 경우 ‘가맹본부’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0조 (가맹점의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가맹 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제시하는 강제 및 권장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의 실사와 검토를 통하여 인테리어 설비 및 간판 설치, 설비기기 구입, 추가설비 구입 및 설치, 기타 물품 구입 등(이하 “가맹점의 설비”라 한다)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설비 중 강제 부분은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권장 부분은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가맹점의 설비를 할 수 있다.

- ③ “가맹점의 설비”의 강제 부분 중 ‘가맹점사업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승인하에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가맹점의 설비를 하는 경우와 정보공개서상의 권장 부분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가맹점의 설비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시설물에 대한 책임은 일체 지지 아니한다.
- ④ 동조 ③항에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가맹점 설비를 하는 경우 『갓잇』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위해 ‘가맹본부’는 설계 및 디자인 노하우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3.3m²당 **사십사만(440,000원(부가세 포함))**을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④항에 따라 시공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의 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공사 현장에 보내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계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파견한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계 도면과 표준 SI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가맹본부’는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점포 계획에 맞도록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하여 점포 시설이 설계도면 및 표준 SI 매뉴얼에 부합하도록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후 자발적으로 점포 내·외관 및 장비 설비에 대한 교체, 변경 시 사전에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해당 경우에도 동조 제8항의 ‘가맹본부’ 매뉴얼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⑧ 본 조의 점포 공사는 『갓잇』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 표준화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사양과 『갓잇』 가맹 사업과의 통일성 및 표준화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개점 또는 영업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추가 품목의 구입 및 오픈 홍보·판촉)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가 품목의 구입 및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추가 품목에 대하여 가맹점의 구조,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전략상 ‘가맹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오픈 시 '가맹본부'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효율적인 가맹점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에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여 홍보·판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홍보·판촉물 제작에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초도물품의 주문)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개점과 고객들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맹점 크기별 초도 물품을 개점 전까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지정 업체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다만, 초도 물품 중 권장 품목의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지정업체에 주문하거나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② 권장 품목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맹 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맞게 구비하여야 하며 개점 전까지 자신의 가맹점에 구비 완료 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가맹점 개점 전 초도 물품의 납품가격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공급 당시 납품가격으로 결정되며 시장 상황 또는 '가맹본부'의 사정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변동된 납품가격에 공급한다.

제13조 (인·허가 및 초기 투자금의 납입)

- ① 가맹점설비 관련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 운영을 위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시 필요한 증명서 등의 제반 인허가는 영업개시일 전까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하거나 필요에 따라 갱신한 후 '가맹본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제8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부속명세서3]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이때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일방적인 변심 등)에 의하여 개점 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미 진행된 인테리어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철거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위약금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한다.

제14조 (개점 점검 및 승인)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일 전일에 ‘가맹본부’에게 구입 및 설치를 의뢰한 가맹점의 설비, 추가 품목, 초도 물품 등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여 ‘가맹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전일까지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에 지급할 금전의 입금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통지 태만으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개업에 앞서 직접 실시한 가맹점의 설비와 추가 품목, 초도 물품의 구입 등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과 사양을 준수하였는지와 시설 공사의 완전성, 가맹 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준수하였는지 ‘가맹본부’는 지정 인원과 함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하여 점검을 진행하며 ‘가맹본부’로부터 개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가맹점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실행하되 ‘가맹본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지정 인원은 ‘가맹점사업자’의 개점 준비를 지도 또는 보조해 줄 수 있다.
- ④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최초 가맹금) 내지 제13조 (인허가 및 초기 투자금)의 이행을 완전하게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표준 SI(Store Identity) 매뉴얼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제9조 개점 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할 금전의 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개점이 연기되는 경우
- ⑤ 전항에 의거 개점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경우에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장 영업활동의 조건

제15조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 등)

- ① 로열티란 브랜드의 시스템 유지·개선 운영, 우수한 노하우의 전수 및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사용권 부여,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 교육, 가맹점 운영을 위한 지원 등 상호이익을 위한 경영지원 활동의 비용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에 ‘가맹본부’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월 로열티에 대한 대가로 매월(1일부터 말일) 부가세 포함 총 매출액(홀 판매 매출액, 테이크아웃 매출액, 배달 매출액을 합산한 매출 총액)의 5.5%(부가세 포함)를 ‘가맹본부’에게 익월 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자동이체) 다만,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이 끝나는 날의 익일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하며 익월 5일까지 지급되는 전항의 월 로열티는 지급되는 날의 전월에 대한 대가이다.
- ③ ‘가맹본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로열티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시점 및 계약기간 내에서 로열티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본 계약서 제7조에 따른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공급품에 대한 대금을 공급품 주문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지급 확인 후 공급품을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 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주문한 공급품의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해당 주문한 품목에 한하여 대금 지급 시까지 출고나, 공급을 지연할 수 있다.

제16조 (개점 이후 교육 및 훈련)

- ① 개점 이후 교육의 종류는 수시 교육, 특별 교육으로 구분하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해당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고용인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수시 교육은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신메뉴의 출시 및 메뉴의 변경·수정·보완 등과 가맹점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할 사항 및 필요한 의견수렴이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③ 신메뉴 출시 및 메뉴 변경·수정·보완으로 인한 수시 교육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수시 교육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교육 실시 15일 전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간 및 장소, 일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교육 7일 전까지 ‘가맹본부’에게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가맹본부’에게 특별교육 및 훈련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비 등의 실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 ⑥ 또한, 특별 교육은 ‘가맹본부’가 시행하는 CRS 평가점수가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와 점 운영 시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합의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 ⑦ 교육장은 ‘가맹본부’의 본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교육 공간에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실질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경영파트너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임을 인정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위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 의한 가맹점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

방지법'이라함)」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동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부여되며 계약종료 후에도 지속된다.

제18조 (경업금지 의무)

- ① '가맹점사업자'(실질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경영파트너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독립 점포 및 타사 가맹점, 가맹본부 운영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 이전에 동종업계 및 경쟁 관계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계약체결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 방지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경영지도)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은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 및 대리인이 제공하는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 및 지도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Contract):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2. 표준화(Standardization):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의 유지 등
 3. 판촉(Sales promotion): 신규 고객 창출 및 판매촉진 활동 지도
 4. 시설(facility):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전반적 시설 및 장비관리 지도
 5.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가맹본부'에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에 따른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 비용 등을 포함한 경영지도에 대한 사전 계획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지도에 대한 사전협의 후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가맹본부’는 특별경영 지도 후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 방안을 3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지도의 내용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사전 협의하여 경영지도의 방법 및 제공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처분에 대해 즉시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독 및 통제)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경영 상태 및 계약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분기 1회 이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의 방문이나 유·무선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 상태, 위생 상태, 품질 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동조 제①항에 따른 점검이나 기타 가맹점 유·무선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중 자신의 가맹점 출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온-오프라인 자료 열람과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응하여야 한다.
- ③ 점검 시 ‘가맹점사업자’의 점검 거부, 자료제출 거부 ‘가맹본부’의 직원에 대한 폭행, 욕설 등 가해행위, 점검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등 점검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필요시 소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가맹점사업자’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 품목)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의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 영업비밀 유지 등을 위하여 제정된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제공된 매뉴얼은 ‘가맹본부’의 전속적 소유물이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대외비로 취급 관리하여 가맹점 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매뉴얼의 변경, 수정, 보완은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 경우 새로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사업자’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운영 매뉴얼에 대한 변경, 수정, 보완을 건의 또는 제안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공급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의적인 메뉴 개발·변경·판매·사용 등을 금지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 및 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에 대해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가맹본부’의 신메뉴 출시 및 메뉴의 변경·수정·보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판매하여야 한다.

제22조 (구입 강제 품목의 지정 및 판매가격)

- ①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이하 구입 강제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부속명세서5]**과 같다.
- ② 동조 제①항에 따른 구입 강제 품목은 신제품 출시, 기존 제품 철수 등의 사유로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부속명세서5]**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해야 한다. 단, 구입 강제 품목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기에 1회로 한정한다.
- ③ 구매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 기준은 **[부속명세서6]**와 같다. 단,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의 창궐 등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전 세계적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변동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부속명세서6]**의 공급가격 결정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④ 위 제3항에 따른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 기준은 품목별 원가율 변경, 급격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부속명세서6]**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해야 한다. 단, 공급가격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기에 1회로 한정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제시하는 필수품목 중 강제 (사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그 외의 권장 품목에 대해서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협력업체”에게 구입을 의뢰하거나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권장 품목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서에 따라 구비 하여야 하며, 브랜드 통일성 및 서비스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전 ‘가맹본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가맹본부’는 시장 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위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가맹본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가맹본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발생한 물류수익(차액가맹금, 경제적이익 등)을 수취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제23조 (구입강제 제품의 협의방식)

‘가맹본부’는 [구입강제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구입강제 품목의 단위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의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기로 한다.

① 구입강제 품목 협의 절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 및 가맹사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2호 나목(4)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가. 거래조건 변경 사실 및 협의 계획의 통지 내용

‘가맹본부’는 구매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거래조건 변경 사유 및 근거, 협의 기간·협의 장소·협의 방식에 대하여 통지해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거래조건에 공급가격이 포함되면 가격 변경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격 산정 방식에 부합되는지도 통지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통지 방식은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OS 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ㄱ) 대면 협의 때에는 ‘가맹본부’는 구매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관련 협의일 기준 10일 전에 장소, 시간, 안건 등을 종합하여 통지하기로 한다.

(ㄴ) 비대면 협의 시에는 POS 시스템 통지 후 3일 뒤부터 POS 시스템 협의 시작과 POS 시스템 협의

기간은 7일로 한다.

나.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 진행

‘가맹본부’는 위 가목에서 통지한 내용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비대면을 불문하나 ‘가맹본부’는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협의와 관련된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다. 협의 결과의 통지

‘가맹본부’는 위 나목에 따른 협의를 종료되고 나면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거래조건 변경 이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가목의 방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협의 결과에는 협의 날짜·협의 장소·협의 방식·협의 참석자,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입장 및 판단 근거,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및 그 밖에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협의 시기

협의를 구매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 변경 후에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즉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동조 ①항 가목에 따른 사항을 통지할 때 사전협의를 할 수 없었던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의 상대방

가. 협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단, 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존재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 단체와 협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100분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단체와의 협의를 전체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로 본다.

나. ‘가맹점사업자’는 단체에 대한 협의 위임은 건별로도 가능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다만, 1년 이상 위임은 개별 점주의 협의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

제24조 (공급품 등의 조달과 관리)

- ① ‘가맹본부’는 자신 또는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급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공급품의 종류 및 “협력업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강제 (사입금지) 품목 (정보공개서 및 서면 등 방법으로 제시한 품목)
 2.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3. ‘가맹본부’가 지정한 권장 품목 중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구입을 의뢰한 공급품
 4.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구입을 의뢰한 공급품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각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주문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주문한 동조 제①항 각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의 배송 일정에 따라 공급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지시를 하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주문 오류에 의한 경우
 2. 외상 매출금 미결제에 의한 배송 중단 및 결제 후 배송일 이외의 일자에 배송을 요청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공급품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4. 통상적인 공급량을 초과한 수요로 인한 절품의 경우
 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협의한 경우
 6. 기타 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유 또는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공급품의 품질을 인수, 보관, 판매 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취급 상품 중 유효기간 경과 및 변질품은 즉시 폐기해야 하며, 상품관리 태만으로 인한 관계 법령 저촉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진다.
- ⑤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공급품의 위험부담은 그 인도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매매대금이 완불될 때까지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공급품을 고객 판매용도 왜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해서는 아니 되며, 취급 품목 중 주류를 미성년자에

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공급품의 공급가격은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가 정하며, 시장 상황 또는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는 그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가격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최종 결정은 쌍방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자점매입)

- ① ‘가맹점사업자’는 제24조 제④항 제1호 등 공급품에 대하여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 직접 공급품을 구매할 수 있다.
1.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④항 제1호 등의 공급품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자점매입 승인을 얻은 경우
 3.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제24조 제④항 제1호 등의 공급품 공급을 공급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가 동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하여 직접 구매하는 공급품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언제든지 그 품질을 검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동조 제④항의 단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점매입을 하거나 ‘가맹본부’의 품질검사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제27조에 의하여 공급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제39조 제①항 제1호에 의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 (공급품의 하자·검사와 반품)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협력업체 포함)로부터 공급품 등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한 후 수량 및 품질의 하자 유무를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한 공급품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가맹본부’에게 통지하고 정상적인 물품으로 보수 또는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급품은 원형으로 파손, 변질이 없이 보존되어야 하며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인도 즉시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자신이 공급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협력업체”가 하자를 알면서 시공을 하였거나 물품을 공급한 경우, “협력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검사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교환·수량보충·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가맹본부’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동조 제②항의 기간과 상관없이 ‘가맹본부’에게 반품·교환·수량 보충·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한 공급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급한 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하지 않은 공급품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보관상의 잘못 및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⑥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가 공급한 상품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인수함과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이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가맹점운영권의 제한)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에 사유가 있는 경우 구두 경고 후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예고한 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맹점운영권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제한 해제 조건을 지체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3조 제③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표지 및 영업지역의 변경)
 - 2. 제4조 제③항에서 허용한 영업 표지의 사용 범위 외에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3. 제4조 제④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 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4. 제15조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에 따른 금전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5. 제17조 (비밀유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6. 제18조 (경업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 7. 제20조 (감독 및 통제) 제①항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 8. 제21조 제②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개발·변경·판매·사용

하는 경우

9. 제21조 제③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메뉴 및 변경·수정·보완된 메뉴를 고객에게 제공·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제24조 제⑥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11. 제25조 규정을 위반하여 서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필수 강제 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12. 제29조 제③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1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로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14. 제31조 규정의 공동광고·판촉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43조 제③항의 “양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하는 경우
 16.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할 대금 지급이 지급기일까지 미이행된 경우
 17.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품의 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 (복장 및 영업시간)

- ①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자(이하 “매장근무자”라 한다)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최소영업일은 주 6일 이상 근무(명절 제외)를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11:00 개점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영업 종료 시각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맹점을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7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휴업 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가맹점설비의 유지 관리 및 점포환경 개선)

- 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의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가맹점설비의 유지관리 및 깨끗한 점포 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설비를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유지·보수 관리하고 수선하며, 부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는 동조 제④항 내지 제⑦항을 적용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부속명세서1]**의 소재지 상의 가맹점 내의 가맹점 설비(간판, 인테리어, 필수설비 등)를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맹본부’는 점포의 시설·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생·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할 수 있다.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년으로 한다.
- ⑤ 전항에 따른 점포 환경 개선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그 범위 및 비용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간판 교체 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관하여는 “가맹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된 사항을 따르며 점포 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 환경 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 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 ⑥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점포 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⑦ ‘가맹본부’는 점포 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또는 영업 양도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30조 (회계, 통지의무 및 POS 등)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공급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하여 연 매출액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동조 제②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직원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⑤ 동조 제①항 내지 제③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POS 등 매출 관리시스템을 구비 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POS(Point of Sales) 등 프로그램 및 장비를 사용하여 매출 및 기타 제공내용을 누락이나 거짓 없이 입력하고, 매출액 및 각종 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POS 등 매출 관리 정보를 열람·확인 할 수 있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사업 장소, 대표자 및 가맹점 관리자 인적 사항 등 사업자 등록상 또는 영업상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광고·판촉 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판촉 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 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 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간의 1/N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분담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별 광고 행위에 따라 분담율은 상호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속명세서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표 참고)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동조 제①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동조 제②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자체 판촉 및 홍보 또는 특별 이벤트 행사를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시기, 방법, 판촉물, 대상, 판촉 장소 등이 기재된 계획서를 ‘가맹본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제 ①항에 따라 광고·판촉 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POS) 등을 통해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제 ①항 ‘가맹점사업자’ 동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 2. 판촉 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①항 본문에 따른 광고·판촉 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한다.
- ④ 제③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판촉 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한다.
 - 1. 광고나 판촉 행사의 명칭 및 실시 기간
 - 2. 광고나 판촉 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비율 및 부담 한도

제33조 (광고·판촉 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②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

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 행사 (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 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 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 사 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①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①항 제3호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 ②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34조 (개점 전 해약)

- ①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일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개점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고, 즉시 ‘가맹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에 본 계약을 해약하였을 때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의 해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해약금 지불 근거는 문서로 ‘가맹본부’가 작성하되 ‘계약당사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최초교육·시설 공사·집기·설비의 설치 작업에 착수하기 전 금액
 - 가. 최초교육 진행 중인 경우 진행된 교육일 외 교육비 일체
 - 나. 최초교육 진행 전인 경우 해당 없음
 - 다. 시설 공사·집기·설비 설치 전 설치 준비 소요 금액
 2. ‘가맹본부’가 시설 공사·집기·설비의 설치 작업에 착수한 금액
 - 가. 시설 공사·집기·설비 설치의 공정별 금액 대비 공정 진행 소요 금액
 3. ‘가맹본부’가 점포 선정 과정에 소요 된 모든 제반 용역비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가. ‘가맹본부’의 제반 용역 명세: 출장비(교통비, 숙식비, 인건비, 기타 비용)
 4. ‘가맹본부’가 매장 실측후 계약 해지 된 경우 실측 과정에 소요 된 모든 제반 용역비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가. ‘가맹본부’의 제반 용역 명세: 출장비(교통비, 숙식비, 인건비, 기타 비용)
- ③ ‘가맹본부’는 전①,②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약된 때는 이미 수령 또는 수탁한 제8조 ①항의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은 반환한다.
- ④ 문서 통지 후 3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갯잇』 시스템에 관한 계약서·자료·서식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 반환한다.
 2. 영업 명칭, 서비스마크 및 상표로서의 『갯잇』의 표시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러한 것을 표시하는 모든 간판·집기, 시설물 등의 물품을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 반환한다.
 3. ‘가맹본부’의 점포 계획, 지시에 따라 진행한 점포 공사에 있어서 『갯잇』 이미지가 남는 것들을 ‘가맹본

부'의 지시에 따라 반환한다.

4. 제④항 2호의 수리 비용, 해체 비용, 운반 비용 등의 일체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으로 한다.

⑤ '가맹본부'가 개점일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개점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고, 즉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⑥ '가맹본부'가 개점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하기의 해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약금 지불 근거는 문서로 '가맹본부'가 작성하되 '계약당사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내·외장 공사 작업에 착수하기 전 금액

2.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내·외장 공사 작업에 착수한 금액

제35조 (계약의 자동적 해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① '가맹본부'의 경우

정부, 국가기관 등의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구조 조정 권고·명령·지시·관계 법령 등의 신설, 개폐 및 '가맹본부'의 해산, 파산, 사업의 철수, 회사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가맹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망 법인의 경우는 해산, 금치산·한정치산, 점포 건물의 멸실 및 법령에 따른 폐업 등의 사유 발생한 경우

제36조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해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아래 사항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 따른 의무 수행에 실패하거나 지연하는 데에 따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정부 행위 또는 법률

② 전쟁, 폭동, 지진, 화재, 홍수 또는 기타 재난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 단 당사자는 그러한 실패 또는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경감시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37조 (합의 해지)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개점일 이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해약의 협정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중도에
서 종료시킬 수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고의, 과실 없이 [부속명세서1]의 점포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상실했을 경우 ‘가맹본부’에
게 고의 과실 없음을 증명한 후 합의 해지할 수 있다.
- ③ 합의 해지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 채권채무액을 정산하여 ‘가맹본부’에게 즉시 지급하
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쌍방 합의에 따른다.

제38조 (중도해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점 후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맹계약 중도해지시점과 위약금
지난 6개월간 평균 월매출액 x5% x잔존개월수 (영업월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제영업기간의 월평균매출액으로 산정함.)

제39조 (계약의 해지)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위반 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제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제8조 내지 제13조의 이행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 지급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6조에서 부여한 영업거점 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 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 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처분
 - 다. 위법 사실을 처분 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③ 동조 제①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후 양 당사자가 서면합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해지를 원하는 자는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0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①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영업 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전화번호 안내,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 정보 표기 등)을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인해 종료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 서류 (매뉴얼 등)를 반환 하거나 ‘가맹본부’의 승인 아래 폐기하여야 한다.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점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5.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온오프라인 상의 ‘(구) 갓잇, 전) 갓잇’ 형태의 표현 사용 금지
- ②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기간,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중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한다.

제41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 계약의 제17조(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및 영업 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25조(자점매입)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목을 자점매입(사입)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각 사유에 대하여 금 이천만(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매출액 대비 평균적 필수(강제)품목 소요량을 산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해지 및 종료시 제40조 제①항 제1호 또는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 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금 이십만(200,000)원의 지체 배상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가맹본부’가 지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등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상대방은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⑧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뚜렷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⑨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 사업과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의 훼손 및 타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뚜렷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가맹금의 반환 등)

- ① 가맹점 오픈후 최초 계약기간 내에 해지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비는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청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가맹금 중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
- ② 반환되는 금전이 있을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가맹 계약의 체결 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 계약기간, 계약이행 기간, 가맹 사업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제43조 (영업의 양도 등)

- ① ‘가맹본부’는 본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본 계약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지위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적 적성과 경영철학 및 자금동원능력이 반영되어 “본 계약”상 그 지위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사업자명의 변경, 점포의 이전 등 (이하“양도 등”이라 한다)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 및 양수인 인터뷰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가

맹점사업자'의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본부' 외 제3자의 위탁경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전항의 승인을 "양도 등"에 앞서 3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④ '가맹본부'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 그 대상자가 본 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승인 통보 시 재심사를 1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재심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가맹본부'가 전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대상자는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가맹본부'와 영업 양수와 관련된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한 때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은 소멸한다. 다만, 자신의 점포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가맹본부'의 승인을 획득한 양도 양수시 가맹점운영권의 양수인과 '가맹본부'와의 계약은 기존 계약의 승계로 보아, 기존 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이 인정된다.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가맹본부'와 승계 가맹계약서를 작성 후 개점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제8조의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일시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 ⑧ 전항에 불구하고 가맹점운영권의 양수인이 신규 가맹 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제8조의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에게 신규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가맹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 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협의할 수 있다.
- ⑨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권리·의무를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의 이유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킬 수 없고 '가맹본부'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양도인에게 직접 반환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다만, 신규 가맹 계약 체결 등 예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예치하도록 한다.
- ⑩ 가맹점운영권의 양수인이 본 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동조 제⑤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가

맹본부'는 본 계약서 제39조 제①항에 따른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44조 (영업의 승계 및 상속 등)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중 '가맹본부'로부터 다음 각호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따른营业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때, 승계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营业을 승계하는 경우
 2. 동업자 간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개인이 법인설립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 ② '가맹점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营业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가맹본부'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거절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점포 运营을 대표할 자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营业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 계약은 종료한다.
- ③ 승계나 상속 등의 경우에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8조의 교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인이나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8조 가맹비가 면제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승계된다.

제5장 기타

제45조 (지연손해금)

- ①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로 지급 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미지급한 채무액은 이자, 원본의 순서로 총당하고,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우선 총당한다.

제46조 (통지방법)

- ① “본 계약”상 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팩스(FAX), E-Mail, 인편 또는 우편으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주소지로 배달되어야 한다.
- ② 별도의 주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변경된 통지처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당사자는 전항의 통지부 도달 또는 잘못을 항변할 수 없다.

제47조 (동의와 권리행사)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상대방과 특정한 계약위반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당해 사실에 국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로써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제48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본 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본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 ③ “본 계약”은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상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본 계약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된 법령이 본 계약 발효일 이후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속히 상호 협의해 법령에 부합하게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 변경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며, 이를 위한 어느 일방의 요청에 적극 협력한다.

제49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맹본부’의 임직원 포함)와 ‘가맹점사업자’양 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 해결 노력을 한다.
- ② 양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50조 (보험)

-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기타 고객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예, 충분한 보험에 자신의 비용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들이 집단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권유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이 손해배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

자'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배상책임이 면책되거나 '가맹본부'에게 배상책임이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51조 (고객 불만 처리)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고객 불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없이 '가맹본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 자료 및 견본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당해 클레임이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 없는 클레임일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 없는 클레임을 '가맹본부'가 대신하여 처리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클레임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 (사전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 ①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게 본 계약을 체결한 날과 가맹금을 최초로 수령한 날 (또는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한 날, 예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치 예정일) 중 빠른 날 14일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사전 제공하여 14일 이상의 충분한 숙고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고자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 ② 전항에 의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였더라도 숙고 기간 14일 (단,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 자문시 7일로 숙고 기간 단축)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가맹금이 지급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가맹사업법상 적용배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당사자 수만큼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가 각각 서명, 날인 하여 1부씩 보관하며 모든 당사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전반적인 계약 내용과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중요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특약사항]

[가맹본부]

상 호 : 주식회사 더갓
주 소 :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179(성내동)
대 표 이 사 : 성 치 훈 (인)

[가맹점사업자]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계약체결일 2026년 월 일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다른 경우나 임차계약서의 계약자가 다른 경우, 동업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경영파트너”로 추가 서명 날인을 요함.

가맹계약 시 가맹점사업자의 필요 구비서류:

1. 가맹신청서
2. 가맹사업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각1부
3. 가맹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
4. 가맹사업자 인감증명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점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주거래 통장 사본 1부

[부속명세서1] 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기간

가 맹 점 명 : (‘가맹점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점 포 소 재 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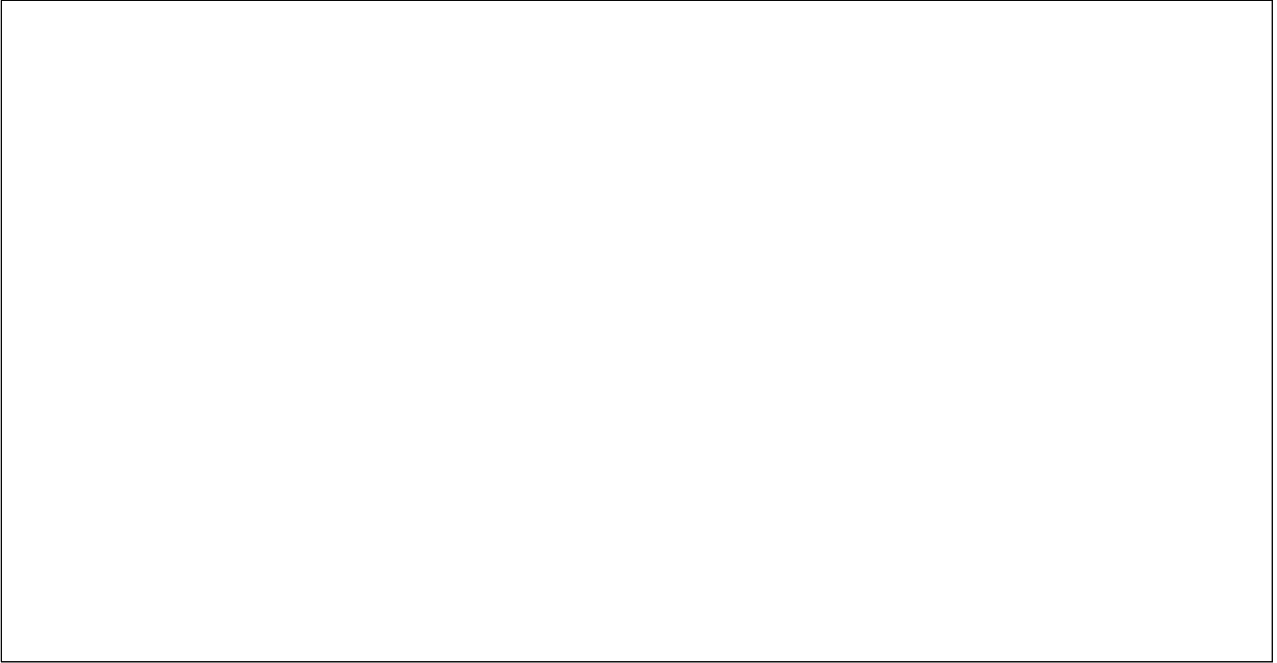
상 호 및 규 모 : (m² / 평/ 층)

가 맹 점 사 업 자 명 : (주민등록번호)

계 약 기 간 : ~

[부속명세서2] 영업지역 표시도

아래 지도표기 (실선)와 같이 영업지역을 확인하고 동의 하였습니다.(일반적인 영업지역보다 우선함)



[부속명세서3] 개설 비용 및 지급 방법

영업표지 『갓잇』 가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을 개점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금액은 [부속명세서1]의 예상 점포 크기에 따른 금액으로 점포 크기 및 총 견적이 변동될 경우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역	금액(원)	부가세(원)	비고
가맹금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부가세 없음	
인테리어	정보공개서/ 견적서 참조			
주방집기				
의탁자				
POS				
간판				
합계				

본인은 갓잇과 영업표지 ‘가맹본부’와 가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일정에 따라 아래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점포 크기 등이 변경되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잔여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는 즉시 반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추가 입금하기로 합니다.

본인서명 :

(인)

[부속명세서4] 광고·판촉 행사 행사시 분담 기준

계약서 본문 제31조에서 정한 광고 판촉 행사 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a)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균분부담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광고의 경우 (a),(b)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각각의 동의율이 50%를 넘는 경우, 광고 집행 기간내 운영중인 가맹점사업자는 모두 광고에 참여 하여야 하며, 비용은 지역별 가맹점별로 1/N을 하여 분담 한다.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b)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균분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	”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 멤버십 등 제휴 서비스	제휴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 → (가맹본부) 자료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서비스 등의 종료시까지

별첨 3. 강제구입품목 list

2026년04월 기준

순번	품목	단위 또는 규격	거래상대방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1	(갓잇)(新)렌치소스	3kg*3pk	(주)더갓	o
2	(갓잇)또띠아10호	BOX(600g*10pk)	(주)더갓	o
3	(갓잇)칠리콘카르네소스	pk(3kg)	(주)더갓	o
4	(갓잇)또띠아6호	BOX(240g*10pk)	(주)더갓	o
5	(갓잇)치폴레살사베이스	pk(3kg)	(주)더갓	o
6	(갓잇)엔칠크림소스	pk(3kg)	(주)더갓	o
7	(갓잇)치폴레렌치소스	pk(3kg)	(주)더갓	o
8	(갓잇)수비드닭다리살	2kg*5pk	(주)더갓	o
9	(갓잇)까르니파스	BOX(2kg*4pk)	(주)더갓	o
10	(갓잇)보울소스	pk(3kg)	(주)더갓	o
11	(갓잇)스테이크-[슬라이스]	250g*30pk	(주)더갓	o
12	(갓잇)닭부채살	2kg*6pk	(주)더갓	o
13	(갓잇)불닭렌치소스	pk(3kg)	(주)더갓	o
14	(갓잇)스테이크-[큐브]	240g*25pk	(주)더갓	o
15	(갓잇)쉬림프파우더	pk(1kg)	(주)더갓	o
16	(갓잇)불닭엔칠소스	pk(3kg)	(주)더갓	o
17	(갓잇)아보카도펠프(新)	1kg*10pk	(주)더갓	o
18	(갓잇)치미추리소스(1kg)	pk(1kg)	(주)더갓	o
19	(갓잇)치폴레소스	pk(2kg)	(주)더갓	o
20	(갓잇)치즈소스	pk(2kg)	(주)더갓	o
21	(갓잇)비프	500*20pk	(주)더갓	o
22	(갓잇)블랙페퍼마요	pk(2kg)	(주)더갓	o
23	(갓잇)갓잇 갓버팔로링	pk(1kg)	(주)더갓	o
24	(갓잇)코코넛라이스	1PK(2KG)*4PK	(주)더갓	o
25	(갓잇)레드치미추리라이스	1PK(2KG)*4PK	(주)더갓	o
26	O(갓잇)토마토살사	pk(4kg)	(주)더갓	o
27	O(갓잇)소불고기볶음밥	box(30pk)	(주)더갓	o
28	O(갓잇)새우볶음밥	box(30pk)	(주)더갓	o
29				
30				

별첨 4.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결정 기준

2026년04월 기준

순번	품목	단위	공급가격(부가세 포함)	공급가격 결정기준
1	(갓잇)(新)렌치소스	3kg*3pk	82,800	직접 제조원가, 간접 제조원가, 판관비에 마진을 더해 결정하되, 공급가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분기 4회 이하로 함.
2	(갓잇)또띠아10호	BOX(600g*10pk)	34,575	
3	(갓잇)칠리콘카르네소스	pk(3kg)	34,200	
4	(갓잇)또띠아6호	BOX(240g*10pk)	19,978	
5	(갓잇)치폴레살사베이스	pk(3kg)	27,600	
6	(갓잇)엔칠크림소스	pk(3kg)	25,213	
7	(갓잇)치폴레렌치소스	pk(3kg)	31,500	
8	(갓잇)수비드닭다리살	2kg*5pk	86,000	
9	(갓잇)까르니따스	BOX(2kg*4pk)	132,260	
10	(갓잇)보울소스	pk(3kg)	29,700	
11	(갓잇)스테이크_[슬라이스]	250g*30pk	285,000	
12	(갓잇)닭부채살	2kg*6pk	96,000	
13	(갓잇)불닭렌치소스	pk(3kg)	29,000	
14	(갓잇)스테이크_[큐브]	240g*25pk	240,000	
15	(갓잇)쉬림프파우더	pk(1kg)	25,000	
16	(갓잇)불닭엔칠소스	pk(3kg)	18,600	
17	(갓잇)아보카도필프(新)	1kg*10pk	125,000	
18	(갓잇)치미추리소스(1kg)	pk(1kg)	13,400	
19	(갓잇)치폴레소스	pk(2kg)	17,000	
20	(갓잇)치즈소스	pk(2kg)	20,000	
21	(갓잇)비프	500*20pk	165,000	
22	(갓잇)블랙페퍼마요	pk(2kg)	13,000	
23	(갓잇)갓잇 갓버팔로링	pk(1kg)	13,800	
24	(갓잇)코코넛라이스	1PK(2KG)*4PK	34,400	
25	(갓잇)레드치미추리라이스	1PK(2KG)*4PK	40,800	
26	O(갓잇)토마토살사	pk(4kg)	34,500	
27	O(갓잇)소불고기볶음밥	box(30pk)	52,500	
28	O(갓잇)새우볶음밥	box(30pk)	49,500	
29				
30				

별첨 5. 구입 권장 품목 list

순번	품목	거래상대방	비고
1	신입 뱃지	(주)더갓	
2	앞치마	(주)더갓	
3	갓잇볼펜	(주)더갓	
4	전단지	(주)더갓	
5	매장 명함	(주)더갓	
6	점주 명함	(주)더갓	
7	이벤트 명함 응모지	(주)더갓	
8	갓잇 상품권	(주)더갓	
9	상품권 봉투	(주)더갓	
10	갓잇 메뉴 배너_A1	(주)더갓	
11	갓잇 통품 배너(메쉬천)	(주)더갓	
12	쉬프트 공유	(주)더갓	
13	주방커튼	(주)더갓	
14	팩업존 커튼	(주)더갓	
15	(갓잇)쇼핑백 대 320*160*300	(주)더갓	
16	(갓잇)쇼핑백 중 260*150*270	(주)더갓	
17	브리프스티커(치킨) 1000장	(주)더갓	
18	브리프스티커(포크) 1000장	(주)더갓	
19	브리프스티커(콤보) 1000장	(주)더갓	
20	브리프스티커(비프) 1000장	(주)더갓	
21	(갓잇)하계 유니폼 S	(주)더갓	
22	(갓잇)하계 유니폼 M	(주)더갓	
23	(갓잇)하계 유니폼 L	(주)더갓	
24	(갓잇)하계 유니폼 XL	(주)더갓	
25	(갓잇)하계 유니폼 XXL	(주)더갓	
26	(갓잇)물티슈	(주)더갓	
27	동계 유니폼 M	(주)더갓	
28	동계 유니폼 XL	(주)더갓	
29	동계 유니폼 2XL	(주)더갓	
30	(갓잇)원목 플레이팅 시그니처 나무도마	(주)더갓	
31	소스건세트(건1,통3)	(주)더갓	
32	소스건 리필통(통 6개)	(주)더갓	
33	(갓잇)OPP 테이프 15mm /P343C [150Box*1]	(주)더갓	
34	(갓잇)크라프트 도시락 2호-타코박스 (185*90*40)	(주)더갓	
35	(갓잇)커트러리케이스(4000*1)	(주)더갓	

POS 내역 정보공개 동의서

본인은 '가맹본부' (협력업체 포함)(와)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점 POS 내역을 수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본사가 요구하는 가맹점 매출 및 매입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서명 :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의 거하여 '가맹본부'는 점주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가맹본부'의 아래 항목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됩니다.

개인정보 항목	이름, 주민번호, 통장계좌, 피부양자 등 가족관계, 주소,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매장 운영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 활용 범위	가맹 계약서 기입 및 초본 첨부 물류 시스템 등록 물류비, 개점 비용 등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및 행사정보 등의 안내 등 기타 업무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가맹계약 기간 및 가맹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
개인정보 파기 방법	제출 서류: 파쇄 전자파일: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가맹 계약의 체결,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가맹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 동의자 :

(인) 또는 서명